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20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4
2. 총괄적 검토	5
3. 개별 검토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26.

다.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초거대 모델 학습과 추론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가르는 실질적 척도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제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일반 인터넷데이터센터·클라우드센터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여, 고성능 연산 중심 인프라의 특수성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력 대용량 수전·냉각·초고속 통신망을 동시에 요구하는 특성과 달리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 주요 절차에서 행정적 병목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회복력을 좌우하는 분산형 구축이 정책적으로 유인되지 못하고, 민간의 개별적 설치가 중심이 되면서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의 위상과 정책적 투자 유인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특례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계획 - 입지 - 건축 - 운영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대규모·고효율 전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 확충과 고도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 초거대 모델 - 데이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경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의 설치, 관계 기관의 협조, 실태조사, 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수도권 구축 특례, 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정, 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2).

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변경·해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비수도권 구축 지원,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4개 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
설치)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9조(실태조사)
- 제10조(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제3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

- 제11조(인·허가 간소화)
- 제12조(세제 지원 등)
- 제13조(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
- 제13조의2(전력거래 특례)

- 제14조(데이터 지원)

- 제15조(수도권 구축 특례)

- 제16조(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 제17조(해외 진출 지원)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19조(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제4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

- 제20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 제21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 제22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의 변경
및 해제)

- 제23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 제24조(비수도권 구축 지원)

- 제2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2. 총괄적 검토

-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¹⁾,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세계 데이터센터 매출은 2023년 3,728억 달러에서 2029년 6,2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²⁾.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촬영소 등 다른 방송통신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분류되어³⁾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⁴⁾,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국회도서관, ‘글로벌 데이터센터 지형도’, “THE 현안” 2024-38호, 2024.12.18.

3)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⁵⁾ 등 소규모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열섬현상,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무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⁶⁾,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구축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도입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간 정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례적 성격의 규정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인공지능기본법의 체계 보완, 일부개정 등을 통해 제정안의 취지를 담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입법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5)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진균, “갈 곳 잃은 도심 속 데이터센터...주민 반대 해법 찾을까”, 파이낸셜뉴스, 2024.9.1.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체계 정합성 및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조문별 검토에서 논의하며,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미 검토한 내용은 제외하고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전력거래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음.

3. 개별 검토

가. 전력거래 특례(안 제13조의2)

(1) 제정안 요지

-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제1항).
-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발전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 전기공급에 관하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함(제2항).

(2) 제정안 조문

제13조의2(전력거래 특례) ①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경우,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공급 필요성, 전력시장 영향, 첨단전략산업 유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발전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 전기공급에 관하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2항 중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발전사업자”로 본다.

(3) 검토사항

-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⁷⁾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발전사업의 정의⁸⁾에도 반영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⁹⁾,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¹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¹¹⁾는 요건을 충족하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분산에너지설비를 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특화지역 내에서 전기사용자와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¹²⁾하고 있음.

7)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10)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1)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 PPA를 체결하여 전기를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조건을 합의로 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력거래가 가능함.
-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최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의 포화 현상과 전국적인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제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발전사업자를 자체적으로 찾아 유리한 조건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PPA를 허용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문제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판매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PPA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특히, PPA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전력판매시장의 일부 민간 개방으로 이어지므로 현재 허용하고 있는 PPA도 소규모 발전소나 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체 전력시장 운영에 미

12)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그런데,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전기사용량이 방대할 뿐만아니라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기준을 정할 때 PPA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업계요구 등을 반영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별 전력현황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개별법에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직접거래 특례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분산에너지 특구(500MW까지 전력직접거래 허용)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

※참고: 2024년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현황(출처: 한국데이터
센터연합회)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1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IT센터	부산 강서구
2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송도 IDC	인천 연수구
3	DB Inc	DB죽전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4	DGB금융그룹	DGB혁신센터	대구 동구
5	Digital Realty	ICN10	서울 마포구
6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서울 중구
7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파이낸스	경기 용인시
8	JB금융	광주은행본점센터	광주 동구
9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염창센터	서울 강서구
10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	경기 김포시
11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여의도센터	서울 영등포구
12	KINX	케이아이엔엑스 도곡센터	서울 강남구
13	KT Cloud	KT청주(분평)IDC	충북 청주시
14	KT Cloud	KT대전(탄방)IDC	대전 서구
15	KT Cloud	KT목동1IDC	서울 양천구
16	KT Cloud	KT강남IDC	서울 강남구
17	KT Cloud	KT여의도IDC	서울 영등포구
18	KT Cloud	KT천안CDC	충남 천안시
19	KT Cloud	KT분당IDC	경기 성남시
20	KT Cloud	KT목동2IDC	서울 양천구
21	KT Cloud	KT용산IDC	서울 용산구
22	KT Cloud	KT부산송정 GHC	부산 해운대구
23	KT GDH	KT GDH	경남 김해시
24	LG CNS	상암IT센터	서울 마포구
25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산 강서구
26	LG CNS	LG CNS 인천센터	인천 계양구
27	LG CNS	LG CNS 가산센터	서울 금천구
28	LG유플러스	LG U+ 서초1 IDC	서울 서초구
29	LG유플러스	LG U+ 서초2 IDC	서울 서초구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30	LG유플러스	LG U+ 대구IDC센터	대구 중구
31	LG유플러스	LG U+ 가산IDC	서울 금천구
32	LG유플러스	LG U+ 상암IDC	서울 마포구
33	LG유플러스	LG U+ 논현IDC	서울 강남구
34	LG유플러스	LG U+ 평촌메가센터	경기 안양시
35	Microsoft	MS KOREA	부산 강서구
36	NH 금융그룹	NH통합IT센터	경기 의왕시
37	NH 금융그룹	농협정보기술연구원	경기 안성시
38	NHN 클라우드	NHNC	경기 성남시
39	NICE홀딩스	나이스데이터센터	서울 강동구
40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서초센터	서울 서초구
41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42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분당센터	경기 성남시
43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가산IDC	서울 금천구
44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일산2IDC	경기 고양시
45	SK주) C&C	SK C&C 대덕데이터센터	대전 유성구
46	SK주) C&C	SK C&C 판교데이터센터	경기 성남시
47	SK텔레콤	성수국사	서울 성동구
48	SK텔레콤	대덕국사	대전 서구
49	교보정보통신구 교보-IBM	교보데이터센터	인천 연수구
50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춘천	강원 춘천시
51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세종	세종 집현동
52	농협정보시스템	농협정보시스템 여의도 IDC센터	서울 영등포구
53	다우기술	다우IDC마포센터	서울 마포구
54	대상정보기술	대상그룹 전산센터	서울 중랑구
55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D-클라우드센터	강원 춘천시
56	드림마크원드림라인	드림마크원 구로IDC	서울 구로구
57	롯데 이노베이트	제1센터 서울센터	서울 금천구
58	롯데 이노베이트	롯데정보통신 용인 정보기술연구소	경기 용인시
59	롯데 이노베이트	마북4센터	경기 용인시
60	삼성SDS	삼성SDS 수원데이터센터	경기 수원시

연번	운영주체	센터명	소재지
61	삼성SDS	삼성SDS 구미데이터센터	경북 구미시
62	삼성SDS	삼성SDS 상암데이터센터	서울 마포구
63	삼성SDS	삼성SDS 춘천 데이터센터	강원 춘천시
64	삼성SDS	삼성SDS 동탄 데이터센터	경기 화성시
65	세종네트웍스	분당센터	경기 용인시
66	수협중앙회	데이터센터	서울 송파구
67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 데이터센터	경기 김포시
68	신한은행데이터센터	신한은행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69	신한은행재해복구센터	신한은행 재해복구센터	경기 고양시
70	싸이버원	싸이버원 IDC	서울 동작구
71	아시아나IDT	아시아나데이터센터	서울 강서구
72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FIS 상암센터	서울 마포구
73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서울 강남구
74	케이엘넷	IDC센터	서울 강남구
75	코스콤	코스콤 여의도 DC	서울 영등포구
76	코스콤	코스콤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77	포스코DX	포스코 포항데이터센터	경북 포항시
78	포스코DX	포스코 충주데이터센터	충북 충주시
79	포스코DX	포스코 광양데이터센터	전남 광양시
80	하나금융티아이	통합데이터센터	인천 서구
81	한화시스템	한화그룹통합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82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파주데이터센터	경기 파주시
83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광주 광산구
84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의왕 데이터센터	경기 의왕시
85	호스트웨이아이디씨	호스트웨이IDC	경기 성남시
86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IDC센터	서울 종로구
87	신테크바이오	신테크바이오	대전 유성구
88	NHN클라우드	국가AI데이터센터	광주 북구
89	KINX	과천데이터센터	경기 과천시
90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경기 안양시
91	드림마크원	인천데이터센터	인천 가좌동
92	에퀴닉스	SL2x	경기 고양시